

EC통합과 에너지시장에의 영향

1. 머리말

EC의 시장통합 움직임은 현재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日本 에너지經濟研究所에서는, EC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통합의 실체에 대해 종전부터 주목해 왔는데, 최근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EC의 에너지 시장통합화의 영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조사·분석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였다.

당초, EC의 경제통합이 논의되더라도, 에너지가 국가안전보장에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EC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통합은 논의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EC의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시장의 통합화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만일 EC의 에너지시장이 통합되면 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日本의 2.7배, 美國의 56%라는 에너지 대소비권을 형성하게 되어, EC 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EC 위원회는 에너지源別로 시장통합화의 지장이 되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①域內시장백서에 있는 에너지관련항목의 적용 ②EC法の 엄밀한 적용 ③에너지와 환경의 조화달성 ④에너지관련분야에 있어 적절한 시책의 수행이라는 실시해야 할 4가지 행동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C에너지시장 통합화의 各個別 문제에 있어서는 각국의 이해대립이 극심하여 주요문제점에 대해 별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후 각국의 이해대립이 완화되어, EC의 에너지시장 통합화가 급속히 촉진될 것으로는 보기 힘들므로, 1992년말까지 완전한 EC의 에너지시장 통합화가 달성되는 것은 곤란할 것 같다. 그러나 EC의 통합이 진전시,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그 영향여하에 따라서는 에너지시장 통합화에 새로운 전망도 열릴 것이다.

2. EC의 시장통합화 움직임

실질적인 EC시장통합화 움직임은, 공동시장의 확립과 각회원국의 경제정책 접근에 의해, 경제활동의 균형있는 발전, 지속적인 경제성장, 생산수준의 향상, 회원국의 긴밀화 등을 목적으로 1957년에 로마조약이 조인된 것에 비롯된다.

1960년대에는 관세동맹 등이 결성되어, 시장통합화로 향해 순조로운 출발을 했으나, 1970년대에는 2차래의 석유위기로 인해, 각회원국이 자국내의 물가대책이나 경기대책에 쫓기게 되어,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80년대가 되자, EC는 석유위기의 후유증에 시달려, 美國이나 日本과 비교해서 실업률 및 GDP 후퇴에 상징되는 경제침체와 첨단기술의 낙후성이 현저해짐으로써 EC의 복원을 위해 시장통합화 기운이 높아져 갔다. 그리고 1985년의 역내시장백서의 발행과, 1986년의 다수결제를 채택한 단일유럽의정서 조인에 의해, 상당한 속도로 현안사항을 토의하게 되었다.

이 역내시장이 완성되면 美國 및 日本에 대항할 수 있는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되어, 그 경제적인 효과는 전

체적으로 1,700~2,500億ECU(27~40兆円)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의 하락, 경제성장, 고용면의 개선 등에도 큰 성과가 예상되고 있다.

3. EC 에너지시장 통합화 현황

EC에너지시장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EC위원회는 1988년에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에너지源別 장애와 대처해야 할 4가지 행동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EC회원국은 지적된 각개별 장애중 몇 개를 약 1년 반에 걸쳐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진전상황은 별로 괄목할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

(1) 石油

石油분야에서는, 생산부터 판매의 전부분에 걸쳐 19항목이 통합의 장애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과세의 조화가 중요과제가 되었다.

EC위원회는 최근,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의 조화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으며, 세제통합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 또한 기업측도 작년 9월에 유럽石油産業協會를 결성하여, 에너지시장통합의 제문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2) 고체연료(石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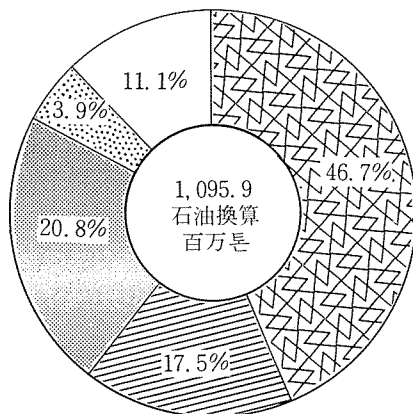
EC의 탄광은 생산비가 상당히 높아서 국제시장의 석탄가격으로는 대부분의 탄광이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EC 각국은 상당한 규모의 국가원조를 실시하여 석탄산업의 보호육성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것이 EC통합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 국가원조의 폐지를 둘러싸고 EC위원회와 西獨은 대립하고 있으며, 타협이 모색되고 있다.

(3) 天然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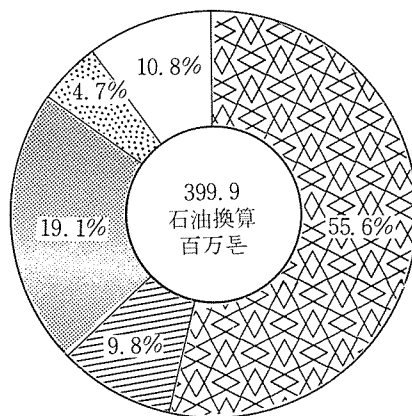
EC위원회는 가스가격(특히 대규모 수요가용)의 정보공개, 가스의 시장개방, 과세의 조화, 가스에 관한 산업기반의 정비 등 4가지를 가스부문에서 다루어야 할 중점사항으로 정한 바 있다.

이중 가스가격의 정보공개, 가스의 시장개방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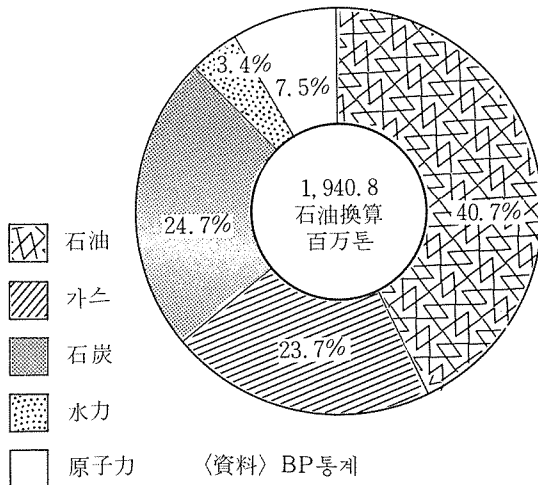
〈그림 - 1〉 EC의 에너지 소비



〈그림 - 2〉 日本의 에너지 소비



〈그림 - 3〉 美國의 에너지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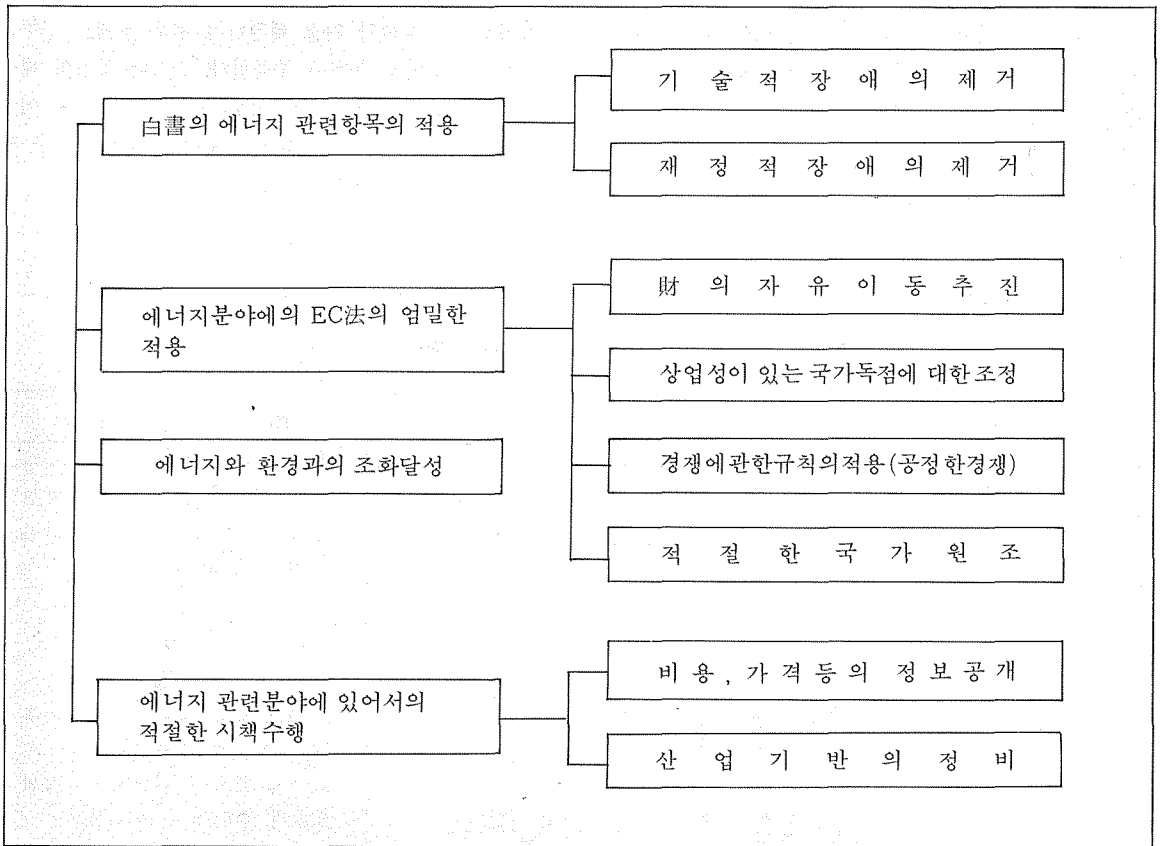


〈資料〉 BP 통계

〈表 - 1〉 EC통합에 의한 이득

| | |
|--|-------------------------|
| (1) 競争증가와 이에 따르는 에너지價格의 低下 (2) 域内거래의 활성화 (3) 규모경제의 혜택 (4) 합리적인 에너지자원의 배분 (5) 強韌하고 유연한 에너지산업의 확립 (6) 청결한 환경과 조화된 에너지정책의 확립 (7) 공급안정성의 증대 | 200~300억 ECU (3~5兆円) |
|--|-------------------------|

〈表 - 2〉 EC의 에너지시장통합화를 위한 행동



논의가 거듭된 결과, 가스가격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EC회원국에서 원칙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스의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EC위원회가 자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장·단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적인 가격차 축소 및 시장확대에 의한 가스개발의 촉진 등 장점도 있으나, 대규모 수요가 이외에 대한 가격의 고등, 장래수요가 불투명해서 투자가 소극적이 되는 등의 단점도 지적되었으며, EC역내의 가스생산, 유통업자뿐만 아니라 학계로부터도 반대의 소리가 높아,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4) 電力

EC위원회는, 전력시장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獨占 및 전매권의 배제, 전기요금 및 코스트(특히 대규모 수요가에 대한)의 정보공개, 과세의 조화, 환경·기술기준 등의 조화, 산업기반의 정비, 전력회사에의 재정·금융상 취급의 조화 등의 문제가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그중에서 전기요금 및 코스트(특히 대규모 수용가용)의 정보공개, 독점 및 전매권 배제의 2가지가 논의의 중점과제가 되었다.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요가에 대한 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EC회원국에서 원칙합의되었다. 그러나 독점이나 판매권 배제에 관련된 전력수송의 자유화

에 대해서는, 이미 英國 및 네덜란드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프랑스는 잉여전력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있으나, 포르투갈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스페인, 석탄문제를 안고 있는 西獨에는 강한 반발이 있어서 난항을 보이고 있다.

4. EC에너지시장통합화의 영향

1992년까지 EC에너지시장의 통합화가 달성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여, 전체에너지 균형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지금까지 거론된 주요과제 중 어느 것이든 하나라도 합의되면(예컨대, 電力의 수송이 자유화되면·電力유통이 증가하는 등) 그 분야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4가지 에너지분야의 중요과제 중에서는 전력 및 가스시장의 자유화가 가장 해결하기 쉬운 문제로 간주되므로, 금후 이의 동향이 주목된다. 그러나 종전의 대응을 보고 있으면, EC에너지시장 통합화의 전도는 어떤 에너지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油開公, 주간석유뉴스〉

〈表 - 3〉 EC의 石油市場統合化에 對한 障礙 및 展望

| 項 | 目 | 該 當 國 | 展 望 |
|-------|---|---|---|
| ① 생 산 | 탐사 및 생산의 독점 광업권의 허가 油田개발의 제약 原油생산에 대한 과세 |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石油탐사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전지역. 石油개발 생산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각국. 전 석유생산국. | • EC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금후 얼마동안은 현상과 변함이 없을 것임. |
| ② 수 송 | 油田으로부터國內港에의 揚陸義務 原油石油製品의 국내수송을 자국업자에게만 인가 原油石油製品의 해상수송에 있어 자국적 선박사용 의무 | 이탈리아, 영국 西獨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 | • EC위원회는 역내수송의 자유화를 겨냥해서 세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국이 적기 때문에 장해제거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 自國籍탱커利用의 의무화에 대해 상기요령으로 하기로 함. (a) 회원국적 선박에 의한 회원국간 |

| 項 | 目 | 該 當 國 | 展 望 |
|--------------|--|---|---|
| | | | 수송에 대해서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 (b) 회원국적 선박에 의한 회원국과 제 3국간의 수송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c) 타선박에 의한 회원국과 제 3국간 수송에 대해서는 1993년 1월 1일 이전 |
| ③ 제품수입, 石油정제 | 域外제국으로부터의 原油, 石油製品의 수입규제 國產原油의 매입의무 • 독점적경제권 • 국내정유소제품의 국내시장판매 독점권 • 역내의 石油製品輸入에 대한 수량규제 • 역내의 石油製品輸入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 • 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자의 월경판매금지 |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포르투갈. | • 작년 9월, 石油會社 31社에 의해 「유럽 石油産業協會」가 설립됨으로써, 그후 진전이 기대됨. • 一部 국가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장애제거에 힘쓰고 있으나, 장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은 1992년말까지는 불가능할 것임. |
| ④ 규 격 · 기 준 | • 石油製品에 적용되는 정의 및 규격의 상위 | 전회원국 | • 유럽石油産業協會에 있어 금후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로 올리고 있으므로 금후 진전이 기대됨. |
| ⑤ 비축의무 가격규제 | 비축의무의 상위 • 石油製品販賣價格 규제 | 전회원국 스페인, 그리스 | • 비축의무의 통일화는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사항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후도 현상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추정됨. • 스페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힘쓰고 있어서 1992년까지 가격규제가 철폐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리스는 아마도 곤란할 것임. |
| ⑥ 조세제도 | • 石油製品에 대한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상위 • 타 간접세의 존재 | 전회원국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 • 세제도 전반의 동향에 따르는바가 크다. 그러나 1992년말까지 세의 調和를 이루는 것은 각국의 이해대립이 커서 무리일 것임. |

〈資料〉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The Internal Energy Market” COM (88) 238, final, 2, May, 1988.

(表-4) EC에너지 시장 통합화에 대한 EC위원회의 장래전망

(단위: 石油환산 100萬톤, %)

| 고체 연료 | 현상유지의 경우(A) | 1987 | | | 1995 | | | 2010 | | | | | | | | | |
|-------|-----------------------|------|-------|-------|--------|-------|-------|---------|-------|-------|-------|----------------|----------------|----------------|--------|-------|--------|
| | | 물량 | 구내생산 | 純輸入 | 計 | 구내생산 | 純輸入 | 計 | 구내생산 | 純輸入 | 計 | | | | | | |
| | | | | | | | | | | | | 1987년 대비 에너지증가 | 1987년 대비 에너지증가 | 1987년 대비 에너지증가 | | | |
| 석유 | 에너지통합화가 촉진되는 경우 B - A | 물량 | 168.9 | 59.2 | 228.1 | 140.9 | 107.2 | 248.1 | ▲28.0 | 48.0 | 20.0 | 105.6 | 217.6 | 63.3 | 158.4 | 95.1 | |
| | | 구성비 | 74.0 | 26.0 | (21.1) | 56.8 | 43.2 | (19.8) | - | - | - | - | 32.7 | 67.3 | - | - | - |
| | | 구내생산 | 同 | 上 | | 150.0 | 113.2 | 263.2 | ▲18.9 | 54.0 | 35.1 | 60.0 | 47.4 | 107.4 | ▲108.9 | ▲11.8 | ▲120.7 |
| 石油 | 에너지통합화가 촉진되는 경우 D - C | 물량 | - | - | - | 9.1 | 0.0 | 15.1 | - | - | - | ▲45.6 | ▲170.2 | - | - | - | |
| | | 구성비 | 150.9 | 357.4 | 508.3 | 125.2 | 444.4 | 569.6 | ▲25.7 | 87.0 | 61.3 | 103.3 | 418.8 | 522.1 | ▲47.6 | 61.4 | 13.8 |
| | | 구내생산 | 29.7 | 70.3 | (46.4) | 22.0 | 78.6 | (45.4) | - | - | - | 19.8 | 81.2 | (37.2) | - | - | - |
| 천연가스 | 현상유지의 경우(E) | 물량 | 129.0 | 71.6 | 200.6 | 136.8 | 95.4 | 232.2 | 7.8 | 23.8 | 31.6 | 121.7 | 154.4 | 7.3 | 82.8 | 75.5 | |
| | | 구성비 | 64.3 | 25.7 | (18.1) | 58.9 | 41.1 | (18.5) | - | - | - | 44.1 | 55.9 | (19.7) | - | - | - |
| | | 구내생산 | 同 | 上 | | 140.0 | 114.4 | 254.4 | 11.0 | 42.8 | 53.8 | 135.0 | 200.0 | 335.0 | 6.0 | 128.4 | 134.4 |
| 원자력 | 에너지통합화가 촉진되는 경우 F - E | 물량 | - | - | - | 3.2 | 19.0 | 22.2 | - | - | - | 13.3 | 45.6 | - | - | - | |
| | | 구성비 | 136.3 | 0 | 136.3 | 179.6 | 0 | 179.6 | 43.3 | 0 | 43.3 | 251.5 | 0 | 251.5 | 115.2 | 9 | 115.2 |
| | | 구내생산 | 100 | 0 | (12.5) | 100 | - | (14.3) | - | - | - | 100 | - | (17.9) | - | - | - |
| 기타 | 현상유지의 경우(I) | 물량 | 19.4 | 1.5 | 20.9 | 23.2 | 2.0 | 25.2 | 3.8 | 0.5 | 4.3 | 29.8 | 1.3 | 31.1 | 10.4 | ▲0.2 | 10.2 |
| | | 구성비 | 92.8 | 7.2 | (1.9) | 92.1 | 7.9 | (2.0) | - | - | - | 95.8 | 4.2 | (2.2) | - | - | - |
| | | 구내생산 | 同 | 上 | | 24.2 | 1.9 | 26.1 | 4.8 | 0.4 | 5.2 | 32.9 | ▲1.1 | 31.8 | 13.5 | ▲2.6 | 10.9 |
| 합계 | 에너지통합화가 촉진되는 경우 L - K | 물량 | - | - | - | 1.0 | 10.1 | 0.9 | - | - | - | 3.1 | ▲2.4 | 0.7 | - | - | |
| | | 구성비 | 604.5 | 489.7 | 1094.2 | 605.7 | 649.0 | 1,254.7 | 1.2 | 150.3 | 160.5 | 611.9 | 792.1 | 1,404.0 | 7.4 | 302.4 | 309.8 |
| | | 구내생산 | 55.2 | 44.8 | (100) | 48.3 | 51.7 | (100) | - | - | - | 43.6 | 56.4 | (100) | - | - | - |
| 합계 | 에너지통합화가 촉진되는 경우 L - K | 물량 | 同 | 上 | | 633.8 | 691.1 | 1,324.9 | 29.3 | 201.4 | 230.7 | 667.9 | 515.0 | 1,182.9 | 63.4 | 25.3 | 88.7 |
| | | 구성비 | 同 | 上 | | 47.8 | 52.2 | (100) | - | - | - | 56.5 | 43.5 | (100) | - | - | - |
| | | 구내생산 | - | - | - | 28.1 | 42.1 | 70.2 | - | - | - | 56.0 | ▲277.1 | ▲221.1 | - | - | - |

(註) ()는 에너지원별 구성비(%)